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54

발의연월일: 2021. 12. 29.

발 의 자:노웅래·조정훈·송옥주

전용기 · 임종성 · 위성곤

류호정 · 임호선 · 한준호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임 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2019년 현재 총유권자 수 4천307만 명 중 40대 이하는 53.7%에 달하지만 45세 미만 국회의원은 6.33%에 불과하여 청년 대표성 항목에서 국제의회연맹(IPU) 150개 회원국 중 143위에 머물고 있음.

40세 미만 젊은 국회의원의 숫자도 제19대 국회 9명, 제20대 국회 3명, 제21대 국회 13명으로 전체 의원 중 1%~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일자리, 부동산, 저출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청년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청년이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에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 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서 34세 이하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함(안 제26조의3 신설).
- 나.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제2항).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34세 이하의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에따라 배분·지급한다.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 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제2항 중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10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를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추천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정당이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 정 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 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 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 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에서 청년후보자(34세 이하의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추천한정당에 대하여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배분・지급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 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 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

- 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
 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 준에 따라 배분 · 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 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 준에 따라 배분 · 지급한 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 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 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 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 과할 수 <u>없다.</u>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 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 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 다.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 ② -----

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 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 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 천보조금은 <u>장애인후보자의 선</u> 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 제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 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 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u>여성정치발전을 위</u>
하여, 100분의 10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하여
③
<u></u> 장애인후보자의, 청
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
④ (현행과 같음)
ll 29조(보조금의 감액)

다.

- 1. ~ 3. (생 략)
-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 <u>추천보조금</u>의 용도 외의 용도 하는 금액
- 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 5.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
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
5. (현행과 같음)